

중국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발표, 외상 투자 관리감독 강화

2021 년 1 월

Issue 2

개요

2020 년 12 월 19 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상무부와 공동으로 외상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가 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이하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심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기초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외국인이 특정 분야에 투자 시 관련 심사를 받고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심사방법>은 2021 년 1 월 18 일부터 유효하며, 특정 분야의 외상 투자 항목에 중대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안전심사방법>은 총 23 조로, 심사가 적용되는 외상 투자 유형, 심사 범위, 심사 기관, 심사 신고 메커니즘, 심사 절차, 심사 결정 및 위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플래시에서는 <안전심사방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분석하였습니다:

1. 안전 심사 관리감독의 외상 투자 유형

<안전심사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외상 안전 심사는 외국투자자의 직/간접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투자 활동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내에서 신규 프로젝트 투자 또는 기업 설립
- (2) 외국투자자가 M&A 를 통해 경내 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
- (3)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경내에 투자

상기 내용에서 보듯이, <안전심사방법>은 안전 심사 범위에 외자 M&A 와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캐치올(Catch all)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구조성 조치(예: VIE 구조 또는 계약지배구조)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IE 구조 또는 계약지배구조가 외상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줄곧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이슈입니다. 상무부는 앞서 2011 년 발표한 <외상투자자의 경내 기업 M&A 에 대한 안전 심사 제도 규정 실행>에서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M&A 에 대해 거래의 실질과 실제 영향에 따라 M&A 안전 심사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대행, 신탁, 다중 재투자, 임대, 대출, 협의지배, 해외 거래 등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제 M&A 안전 심사를 회피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부문은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 실제 지배 원칙에 따라 관련 M&A 거래가 안전 심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와 같은 후속적인 법규는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발표된 <안전심사방법>은 외상투자자의 관리감독이 VIE 구조 또는 계약지배구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 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3건의 계약지배구조 관련 거래에 대해 법에 의거 조사를 진행하면서 거래 주체가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경영자집중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당사자에게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외국투자자가 VIE 구조 또는 기타 간접 구조를 통해 전개하는 경내 재투자자는 안전 심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의할 점은, 외국투자자의 증권거래소 등을 통한 경내 기업 주식 매수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안전심사방법>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안전심사방법>에 따라 별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 안전 심사 관리감독의 산업 분야

모든 외상 투자가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심사방법> 제 4 조에 따르면, 안전심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외상 투자에 적용됩니다:

(1) 방위산업(军工), 방위산업 연관 산업(军工配套)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분야 및 군사 시설과 방위 산업 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투자

(2) 국가 안전과 관계된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형 장비 제조, 중요 인프라 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중요 IT 및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 서비스, 핵심 기술 및 기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해당 피투자기업의 실질 지배권 취득

상기 (1)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해 <안전심사방법>은 외국투자자의 최저 문턱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방위산업, 국방, 군사 시설 등 분야의 외국투자자의 경우 극소량의 지분 또는 권익이라도 안전 심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연관 산업(军工配套)", "군사 시설"과 "주변 지역" 등 개념의 내용과 파생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심사방법>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법규 공백은 이후 후속적인 세칙 발표를 통해 추가 해석하거나 주관 부문이 관리감독 실무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2)에서 규정한 중요 분야는 국무원이 2015 년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국가 안전심사 시행방법>을 바탕으로 "중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및 "중요 금융 서비스" 등 내용을 추가하고, "기타 중요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관리감독부문에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배권 취득" 인정에 대해 <안전심사방법>은 실질 지배는 지분 지배(50% 이상의 지분) 뿐만 아니라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기업 결의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안전 심사 기관

국가는 <안전심사방법>에 따라 외상 투자 안전심사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해당 업무 메커니즘 오피스(이하 "업무 오피스")는 발개위에 설치되며, 발개위와 상무부가 주축이 되어 외상 투자 안전심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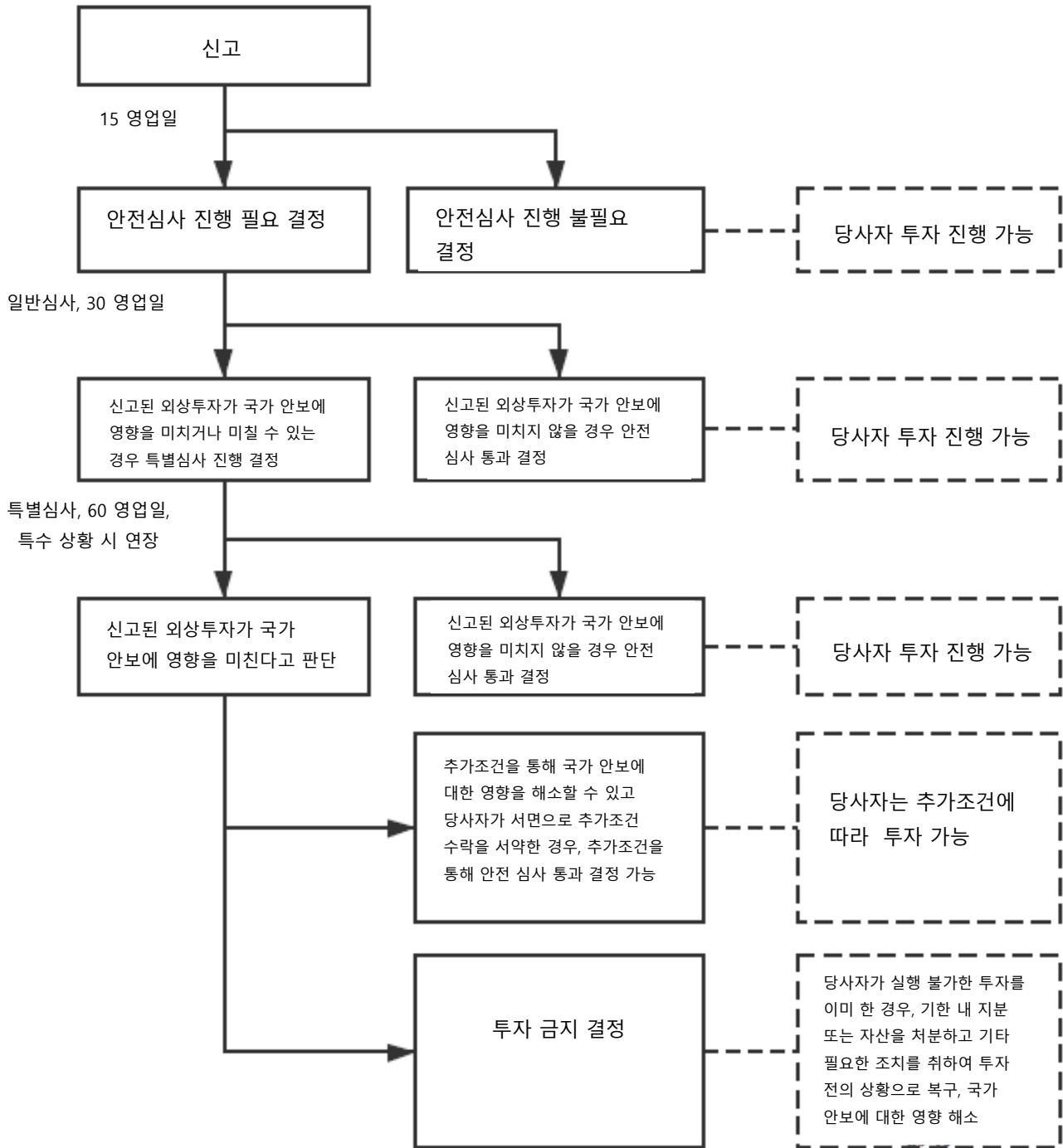
4. 안전심사 신고 메커니즘

<안전심사방법>은 안전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외국투자자 또는 경내 관련 당사자는 투자 진행 전 자발적으로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를 신고
- (2)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은 외상 투자에 대해 업무 오피스는 당사자에게 기한 내 신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 (3) 유관 기관, 기업, 사회단체, 대중 등도 업무 오피스에 심사 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안전 심사 절차

<안전심사방법>은 외자 안전심사 절차, 스케줄, 제출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오피스는 신고된 외상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응당 협조해야 하고,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외상투자법>과 <안전심사방법>에 따르면, 업무 오피스가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안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6. 위반 책임

<안전심사방법>의 관련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 프로젝트에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심사방법>은 신고 거부, 허위 조작, 추가조건 미집행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오피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기한 내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 전의 상황으로 복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을 해소하도록 명령.
- 또한 그 신용 불량 기록을 국가 신용 정보 시스템에 등록시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 징계 실시.

핵심 요약

최근 세계 주요 국가/지역들이 외상 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거나 보완하고 있으며, 미국은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FIRRMA)를 발표하여 CFIUS 심사 체제를 강화하였고, EU는 <Framework Regula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영국은 최근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안전심사방법> 발표 및 시행은 중국이 외자 관리감독에 대해 “개방”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서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심사방법>이 여러 중요 분야에 적용됨을 감안할 때, 이는 외국인의 중국 경내 투자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wC는 해외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외상 투자 진행 또는 거래 전, 관련 투자 행위 또는 거래가 안전 심사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유관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며 스케줄을 세우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할 것.
- <안전심사방법>이 외상 투자 유형 및 투자 범위에 대해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오피스에 사전 문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문의가 필요한 경우, 거래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노출할 지 여부를 고려할 것.
- 각 관리감독 부문의 연합 및 통합 서비스가 중국 정부 서비스 개혁의 방향성임을 감안하여, 안전심사 관련 투자 또는 거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 신고, 국유 자산 심사, 발개위 부문 심사 등의 관련 절차와 연계 사항을 조기에 계획 및 일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
- 안전심사 결정의 최종적 특징을 고려할 때, 투자자는 거래가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추가조건 하에 통과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 내용(예: 투자 구조, 진술 보장 조항, 인도 조건, 지급 방식, 배상 메커니즘, 계약 해지 등 조항) 또는 기타 규제 조치를 통해 법률적 비즈니스적 위험을 낮출 것.
- 이와 동시에, 투자자는 국가가 새로 발표하는 여러 규정(예: 최신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각 자유무역구 선행/시범 조치 등에 따른 기회)을 고려하여 투자 방안 및 실행 지역을 신중히 선택할 것. 필요 시, 조정해야 할 구조와 조치에 대한 법률적, 세무적 영향 분석도 진행할 것.

PwC, Rui Bai Law Firm, Xin Bai Law Firm 및 Tiang & Partners Law Firm은 외상투자분야에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심사방법>의 실행과 기타 외자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Rui Bai Law Firm은 독립된 로펌이자 PwC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성원입니다.

** Xin Bai Law Firm은 독립된 로펌이자 PwC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성원입니다.

*** Tiang & Partners Law Firm은 독립된 홍콩의 로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1 年 1 月 6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